

## 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 : 유진챔피언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나. 변경시행일 : 2019년 12월 13일(금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

라. 정정사유 :

- 1) 클래스 명칭 개정 및 신설
  - ① Class E 수익증권 → Class C-E 수익증권으로 개정
  - ② Class A-E, Class C-Pe2 수익증권 신설
- 2)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### 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[표지] ■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코드(종류형 포함)	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E) 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 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</a> <a href="#"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 [CZ553]</a> <a href="#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 (C-Pe2) [CZ554]</a>
<b>요약정보</b>		
투자비용 표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%) /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제시 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E)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%) /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제시 <a href="#"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</a> <a href="#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</a>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E) 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 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</a> <a href="#"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 [CZ553]</a> <a href="#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 (C-Pe2) [CZ554]</a>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E) 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 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</a> <a href="#"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 [CZ553]</a> <a href="#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 (C-Pe2) [CZ554]</a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1) 클래스 명칭 개정 및 신설 ① <a href="#">Class E 수익증권 → Class C-E 수익증권으로 개정</a>

		<p><a href="#">② Class A-E, Class C-Pe2 수익증권 신설</a></p> <p><a href="#">2)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a></p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"가.투자대상"	<p>②채권 (생략)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</p> <p>※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자산의~(중략)~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②채권 (현행과 같음)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-이상)</p> <p>※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자산의~(현행과 같음)~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"나.투자제한"	<p>투자대상 종류: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</p> <p>투자제한의 내용: 나.지방채증권,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~(중략)~ 또는 어음, <a href="#">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/a>,~(생략).</p>	<p>투자대상 종류: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</p> <p>투자제한의 내용: 나.지방채증권,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~(현행과 같음)~ 또는 어음, <a href="#">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/a>,~(현행과 같음).</p>
10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"나.특수위험"	<p>&lt;신 설&gt;</p>	<p>구분:리츠(REITs)의 유동성에 따른 위험</p> <p>내용:<a href="#">증권시장에서 REITs 개별 종목의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,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</a></p>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"가.매입", "(2)종류별 가입자격"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E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</p> <p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 :</p> <p>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a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e2) :</p> <p>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을 통하여 가입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</a></p>
11. 매입, 환매, 전환	<p>&lt;신 설&gt;</p>	<p><a href="#"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</a></p>

<p>기준, “가.매입”, “(3)선취판매수수료”</p>		<p><u>납입금액의 0.40% 이내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“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”, “(1)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</p>	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E)</u>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</u> <u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</u> <u>-선취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의 0.40% 이내</u> <u>-후취판매수수료 : 없음</u> <u>-환매수수료 : 없음</u> <u>-전환수수료 : 없음</u> 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e2)</u> <u>-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</u> <u>-후취판매수수료 : 없음</u> <u>-환매수수료 : 없음</u> <u>-전환수수료 : 없음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“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, “(1)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</p>	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E)</u>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[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예시)] 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E)</u> <u>&lt;신 설&gt;</u>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</u> <u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</u> <u>-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50%</u> <u>-판매회사보수 : 연 0.25%</u> <u>-신탁업자보수 : 연 0.03%</u> <u>-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2%.</u> <u>-총보수 : 연 0.8000%</u> 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e2)</u> <u>-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50%</u> <u>-판매회사보수 : 연 0.375%</u> <u>-신탁업자보수 : 연 0.03%</u> <u>-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2%.</u> <u>-총보수 : 연 0.9250%</u> [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예시)] 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</u> <u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</u> 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Pe2)</u></p>

<p>14.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“가. 이익 배분”</p>	<p>(1)(생략) (2)상환금 등의 지급 (생략)~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(생략)</p>	<p>(1)(현행과 같음) (2)상환금 등의 지급 (현행과 같음)~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</p>		
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, “가.수익자총회”, 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	<p>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(생략) -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(생략)</p>	<p>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(현행과 같음) -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, “가.수익자총회”, (5) 투자신탁의 합병</p>	<p>가~다(생략) 라. 손해배상책임 [손해배상의 주체] (생략) -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(생략)</p>	<p>가~다(현행과 같음) 라. 손해배상책임 [손해배상의 주체] (현행과 같음) -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<u>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</u>)(현행과 같음)</p>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, “나.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”</p>	<p>①(생략) ②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~(중략)~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 공시하거나 <u>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</p>	<p>①(현행과 같음) ②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~(현행과 같음)~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</p>
<p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, “가. 정기보고서”,“(2)자산운용보고서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~(중략)~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(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~(현행과 같음)~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(생략)</p>

**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**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①,②(생략) ③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2(생략) 3. Class E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 4~12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  <u>&lt;신 설&gt;</u>	①,②(현행과 같음) ③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2(현행과 같음) 3. <u>Class C-E 수익증권</u> 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 4~12(현행과 같음) 13. <u>Class A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이며,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 14. <u>Class C-Pe2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을 통하여 가입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</u>
제9조(수익권의 분할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  ② (생략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  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</u> 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,2(생략) 3. Class E 수익증권 4~12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 <u>&lt;신 설&gt;</u> ②~⑤(생략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</u> 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 1,2(현행과 같음) 3. <u>Class C-E 수익증권</u> 4~12(현행과 같음) 13. <u>Class A-E 수익증권</u> 14. <u>Class C-Pe2 수익증권</u> ②~⑤(현행과 같음)
제14조(수익자명부)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6호

	<p>②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 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(생략)</p> <p>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예탁결제원</u>은~(생략)</p> <p>⑦, ⑧ (생략)</p>	<p><u>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 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~(현행과 같음)</p> <p>⑦, ⑧ (현행과 같음)</p>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<p>①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</u>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(생략)</p> <p>③, ④ 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(현행과 같음)</p> <p>③, ④ (현행과 같음)</p>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(생략)</p> <p>1.(생략)</p> <p>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~(중략)~<u>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u> 3~10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~(중략)~「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- 이상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3~10(생략)</p>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<p>1, 2 (생략)</p> <p>가.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의</p>	<p>1, 2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의</p>

	<p>것은 제외한다) 및~(중략)~ 어음, 경 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 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<u>총 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 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~(생략)</u> 다.(생략)</p>	<p>것은 제외한다) 및~(중략)~ 어음, 경 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 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<u>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 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 또는~(생략)</u> 다.(현행과 같음)</p>
제20조(한도 및 제한 의 예외)	<p>① (생략)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~(중략)~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본다. ③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~(중략)~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<u>현재 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 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)는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(현행과 같음)</p>
제25조(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	<p>①(생략) 1~2(생략) 3. <u>Class E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온라 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</u> 4~12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  <u>&lt;신 설&gt;</u> ②,③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 1~2(현행과 같음) 3. <u>Class C-E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온 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</u> 4~12(현행과 같음) 13. <u>Class A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이며,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 14. <u>Class C-Pe2 수익증권: 판매회사 의 온라인(On-line)을 통하여 가입하 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 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</u> ②,③(현행과 같음)</p>
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	<p>①,② (생략)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예탁결제원</u>을 통하 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,② (현행과 같음)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 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39조(보수)	<p>①,②(생략) ③1,2(생략) 3. <u>Class E 수익증권</u> 가~라(생략) 4~12(생략)</p>	<p>①,②(현행과 같음) ③1,2(현행과 같음) 3. <u>Class C- E 수익증권</u> 가~라(현행과 같음) 4~12(현행과 같음)</p>

	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13. Class A-E 수익증권 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</u>  <u>연 1000분의 5.00</u> 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:</u>  <u>연 1000분의 2.50</u> 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</u>  <u>연 1000분의 0.30</u> 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</u>  <u>연 1000분의 0.20</u></p> <p>14. Class C-Pe2수익증권 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</u>  <u>연 1000분의 5.00</u> 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:</u>  <u>연 1000분의 3.75</u> 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</u>  <u>연 1000분의 0.30</u> 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</u>  <u>연 1000분의 0.20</u></p>
제40조(판매수수료)	<p>①(생략)                  ② 1~2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③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② 1~2(현행과 같음)  <u>3. Class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40 이내</u>                  ③(현행과 같음)</p>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<p>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② 1~4 (생략)                 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       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~(중략)~ <u>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.</u>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② 1~4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     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~(중략)~ <u>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.</u></p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①~⑥ (생략)                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</p>	<p>①~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으로 교</u></p>



	<p>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<u>100만원 이하</u>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~(중략)~ 따라야 한다.</p> <p>⑧~⑬ (생략)</p>	<p>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<u>100만원 이하</u>이거나(<u>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</u>)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~(중략)~ 따라야 한다.</p> <p>⑧~⑬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	--